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2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8.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김진희)

가. 제안이유

- 구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 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안 제3조~제4조)
- 구민참여의 확대 및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안 제6조~제12조)
-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제정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구민참여의 확대 및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3조에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민 참여 확대와 다양한 정책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의 촉진을 위해 주요 기능을 하므로 위원 구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내용

- 안 제9조 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9조 제3항 전체를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한다

○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 10. 1.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35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 2018. 3. 5.

제안자 : 마숙란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의 촉진을 위해 주요 기능을 하므로 위원 구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수정내용

- 안 제9조 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9조 제3항 전체를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한다.
-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 10. 1.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 전체를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고,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 10. 1.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9조(협의회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③ <u>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제9조(협의회회의 구성) ① ----- ----- ----- <u>구성하되, 영등포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u> ③ <u>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1.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u> 2. <u>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u>
부칙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이 조례는 2018. 10. 1.부터 시행한다.</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

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의회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 10. 1.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35 호
----------	---------

제출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 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구민참여의 확대 및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안 제7조~제12조)

라.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8.1.18. ~ 2.7.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